P-mec

2019년 8월 21일 – 23일
서울 코엑스

유비엠코퍼레이션한국 ㈜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214
우도빌딩 8층
T: 02 – 6715 – 5400
F: 02 – 432 – 5885
E-mail: cphi-kr@ubm.com

참 가 신 청 서

참가업체(계약자) 정보

회사명(국문)		회사명(영문)	
주소			
우편번호		웹사이트	
전화		팩스	
담당자명		직함	
이메일			
인보이스 주소 (상단 기본 주소와 다를 경우 기재 요망)			

* 참가업체 정보란에 기재하신 정보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내 "정보 수집 및 사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참가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 부스 배정은 전시회 이전에 이루어지며, 부스 상황에 따라 기재해 주신 부스와 다른 부스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만일 부스 배정 시에 희망하신 부스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 기존 희망 부스 외에 대안 부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UBM은 대안 부스 외에 다른 부스를 제안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취소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신청했던 부스 면적의 크기를 축소할 경우
  – 신청했던 부스 면적을 전부 취소할 경우
· 주최사가 허용한 변동 사항 외 추가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희망 부스 번호를 선호 순서대로 기재해 주십시오.

1. 부스번호 _____ 2. 부스번호 _____ 3. 부스번호 _____

아래와 같은 부스형태로 ____ ㎡ 를 신청합니다. (희망란에 "√" 표시해 주십시오.)

부스 옵션	최소 전시면적	참가비
독립부스(원/㎡)	18㎡	☐ ₩ 350,000
조립부스(원/㎡)	9㎡	☐ ₩ 400,000

* 18㎡ 이상: 총 참가비의 10% 할인 * 36㎡ 이상: 총 참가비의 15% 할인 * 54㎡ 이상: 총 참가비의 20% 할인

총 참가비 : ₩ _____ *부가세 별도

* 참가 취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전시회 참가규정 제 10조 "연기, 변경, 취소 및 환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대 비용

CPhI Online(선택): $540
– CPhI Online(www.cphi-online.com)은 CPhI 전시회 참가업체들을 위한 공식 네트워킹 웹사이트입니다. CPhI Online에 귀사의 상품 및 서비스를 등록함으로써 전시회 기간은 물론이고 등록 기준일로부터 1년 내내 24만 5천명 이상의 제약산업 관련 바이어에게 직접적인 교류 및 홍보가 가능합니다.

부스 공유

참가업체는 주최자의 사전 서명 승인 없이 전시면적을 제삼자와 공유할 수 없으며, 부스 공유 회사 1개 추가 당 400,000원(부가세 별도)이 참가업체에게 별도로 청구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시회 참가 규정 내 제 4조 "전시면적 배정 및 승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 발행 및 참가비 지불 일정

인보이스는 참가 신청 날짜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태로 발행됩니다.

참가 신청 날짜	인보이스 발행 날짜	인보이스 형태
2019년 2월 21일 이전	참가 신청 접수 후 바로 발행	총 참가비의 50%는 인보이스 발행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 잔액 50%는 2019년 4월까지 납입
2019년 2월 21일 이후		총 참가비의 100%를 2019년 4월까지 납입

참가 취소

참가신청서 제출 후에 전시회 참가를 취소할 경우, 취소 날짜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취소 날짜	취소 위약금
2019년 2월 21일 이전	참가비의 50%
2019년 2월 21일 – 4월 20일 사이	참가비의 75%
2019년 4월 21일 이후	참가비의 100%

정보 수집 및 사용

귀사로부터 제공된 정보는 전시회 진행 및 추후 있을 전시회와 전시회 관련 서비스 안내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참가신청서 상에 기재된 담당자의 연락처가 주요 연락처로 사용됩니다. 또한 UBM은 UBM 그룹 및 전시장 운영자를 포함한 전시회 관련 제삼자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의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 사항이 있거나 주요 연락처를 변경하고 싶으실 경우, cphi-kr@ubm.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 UBM으로 제공된 정보는 UBM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준거하여 사용됩니다(privacypolicy.ubm.com)

특별 홍보 패키지

☐ 365일동안 회사 노출도를 높일 수 있는 *프리미엄 프로필 서비스 제공
특별가: 199만 5천 원 (부가세 별도)

☐ 10만 뷰 배너 광고 및 **CPhI Online 이뉴스레터 (전세계 12만 5천 명 구독) 내 기사 광고 1회 제공
특별가: 256만 5천 원 (부가세 별도)

*CPhI Online 내 Supplier 페이지에 50개 이상의 상품 정보 등록 가능

**기사 광고: 회사 로고 또는 사진 – 273px (w) x 125px (h) & 200자 내의 보도자료, 기사, 또는 요약문 & 하이퍼링크

기타

☐ 스폰서쉽 ☐ 디지털 홍보 ☐ 참가업체 세미나 ☐ 미팅룸 ☐ 1 : 1 매치메이킹 프로그램

CPhI 해외 전시회

아래와 같은 CPhI 해외 전시회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희망란에 " √ " 표시해 주십시오.)

☐ **CPhI Worldwide**
2018년 10월 9일 – 11일,
스페인 마드리드

☐ **bioLIVE**
2018년 10월 9일 – 11일,
스페인 마드리드

☐ **CPhI & P-MEC India**
2018년 12월 12일 – 14일,
인도 델리

☐ **Pharmapack Europe**
2019년 2월 6일 – 7일,
프랑스 파리

☐ **CPhI South East Asia**
2019년 3월 12일 – 14일,
태국 방콕

☐ **CPhI Japan**
2019년 3월 18일 – 20일,
일본 동경

☐ **CPhI North America**
2019년 4월 30일 – 5월 2일,
미국 시카고

☐ **MedtecLIVE**
2019년 5월 21일 – 23일,
독일 뉘른베르크

☐ **CPhI & P-MEC China**
2019년 6월 18일 – 20일,
중국 상해

☐ **CPhI Middle East & Africa**
2019년 9월 16일 – 18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회사 명판 및 서명

* 당사는 동 참가신청서 상에 기재된 부스 면적 및 관련 서비스를 신청한 데에 동의합니다.
* UBM은 동 참가신청서 상에 기재된 부스 면적 및 관련 서비스를 전시회 참가규정에 준거하여 참가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시회 참가규정은 동 참가신청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으며, www.cphikorea.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는 전시회 참가규정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전시회 참가규정을 준수하고 주최자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담당자명 :

직함 :

서명 : 날짜:

회사 명판 :

동 참가신청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입니다. 참가신청서 원본은 UBM으로 보내주시고, 복사본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참가 규정

【제 1조】 용어 정의

이 계약 조건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항. "참가 신청서"라 함은 주최자가 제공하는 "참가신청서" 양식을 말한다.
제2항. "계약"이라 함은 전시자와 주최자 간에 맺어진 계약을 말하며 전시자가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시회 참가 규정에 동의하고 참가신청서를 제출해 참가 신청을 하고, 주최자가 동 참가신청서를 승인함을 말한다.
제3항. "전시회"라 함은 참가신청서 상에 명시된 전시회를 말한다.
제4항. "전시장"이라 함은 참가신청서 상에 명시되거나 또는 주최자가 제4조에 의거해 선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5항. "전시장 운영자"라 함은 전시장의 소유자 / 사업자 / 운영자/ 담당자를 말한다.
제6항. "전시면적"이라 함은 전시장 내에서 전시회를 목적으로 주최자가 동 참가 규정 하에 전시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공간을 말하며, 조립부스 및 독립부스를 포함한다.
제7항. "전시회 공식 디렉토리"라 함은 주최자 혹은 주최자가 지정한 자가 발행하는 전시회의 공식 디렉토리를 말한다.
제8항. "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해 제출한 참가신청서 상에 게재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하며 참가신청서 상에 게재된 회사의 고용인 및 회사에 의해 권한이 위임된 대리인 등을 말한다.
제9항. "전시자 매뉴얼"이라 함은 주최자가 전시자에게 전시 장소 및 부스에 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 전시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및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공하는 매뉴얼을 말한다.
제10항. "참가비"라 함은 주최자가 허가한 전시면적을 사용하기 위해 전시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전시자는 구체적인 전시면적을 참가 신청서 상에 기재한다.
제11항. "주최자"라 함은 참가신청서 상에 주최자로 명시된 회사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2항. "대리인"이라 함은 전시자의 회사 고용인, 보조인, 계약업체, 협력업체 등 전시자에게 위임 받은 모든 법인격을(법인격이 없는 사단법인 및 단체를 포함) 말한다.
제13항. "참가 규정"이라 함은 전시회와 관련해 전시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말한다.

【제 2조】 참가 규정 및 전시자 매뉴얼

제1항.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요청하면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참가 규정을 따르고, 준수하며, 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제2항. 전시자는 전시자 매뉴얼을 따르고 준수하며, 그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제 3조】 참가 신청 및 계약

제1항. 참가 신청은 반드시 주최자가 제공하는 동 참가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작성한 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참가신청서 접수 시 주최자가 요구하는 일정과 시한 내에 해당 계약금을 납입해야 한다. 납입된 당해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제삼자에게 양도되지 않는다.
제2항. 주최자는 독립적인 재량에 따라 사전 양해 없이, 신청을 접수하거나,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제3항.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이외의 양식을 이용해 참가 신청하고, 주최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동 참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주최자가 요구할 경우,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4항. 전시자는 주최자가 요청할 경우, 그에 해당되는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야 한다.
제5항. 전시자가 이미 신청한 전시면적을 취소하거나 축소할 경우 전시자가 납입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제6항. 모든 참가비 납입이 이루어졌어도 전시면적이 배정되기 전까지는 참가 신청이 완료되지 않는다.

【제 4조】 전시면적 배정 및 승인

제1항. 전시면적은 (주최자 및 주최자가 승인한 모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시자에게만 비독점적으로 허락된다.
제2항. 전시면적은 전시자에게만 사용이 허용되며 전시자는 배정 받은 전시면적을 주최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삼자에게 전매하거나 분할, 교환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이에 준하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전시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제3항. 전시자가 전시면적 또는 전시회 공식 디렉토리 상에 게재될 회사명을 참가신청서와 상이한 것으로 사용하기 원할경우 전시자는 전시회 개막 3개월 전에 주최자로부터 서면 상으로 사전 동의를 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시자는 합법적인 근거나 사유를 주최자에게 서면 제출해야 한다. 주최자가 회사명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는 전시자가 회사명을 변경하거나, 새 회사를 자회사로 추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4항. 주최자는 참가신청서 접수 순서와 신청한 면적, 전시품의 성격에 따라 부스 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항. 주최자는 주최자 고유의 재량으로 합리적 필요에 따라 전시 장소를 변경하거나 전시회 개장 시간, 전시 기간, 전시개최일을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6개월 내로 변경할 수 있고,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면적의 위치 및 형태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출입구를 변경하거나 폐쇄하는 것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변경도 할 수 있다. 전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6항. 조립부스는 주최자가 제공하는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주최자의 서면 승인 없이 상호 간판과 글자를 포함한 기본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전시품 및 시설물을 주최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기본구조물 높이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제7항. 조립부스는 전시자 매뉴얼 상의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받게 된다. 모든 형태의 전시 시설물 설치는 전시자 매뉴얼을 통해 주최자가 제시한 마감일 이전에 디자인을 비롯한, 도면과 배치도 등을 주최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최자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으며, 주최자가 승인한 내용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참가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한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사전 승인 없이 설치된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해당 전시자가 지불해야 하며, 이미 지불된 경우 환불되지 않는다. 주최자가 지시한 기한까지 시정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시자는 발생되는 위험, 손해 및 발생 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조】 전시

제1항. 전시자는 모든 전시품 및 관련 물품의 전시장 반입 및 반출을 위해 공식 서류를 주최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식 운송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시자는 자체 비용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 운송, 승인, 허가, 설치 및 보관을 책임져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안전 대책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2항. 전시자는 모든 전시품 및 관련 물품의 전시장 내 작동 및 시연 시 주최자로부터 서면 상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하며 자사 직원 및 제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 및 예방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시품의 작동 및 시연은 반드시 전시자가 허가한 자를 통해 진행돼야 하며, 전시자가 허가한 자의 부재 시에는 해당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제3항. 전시자의 장치, 가구 배치, 제품 전시, 상담, 시연 및 홍보 활동은 배정된 전시면적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벗어날 수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위험 물품을 전시면적 내에 보관할 수 없다.
제4항. 전시자 또는 관련 회사가 생산하지 않은 제품 및 홍보물을 전시, 배포하거나, 참가 신청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제품을 전시할 경우 주최자는 해당 전시면적을 철거하거나 폐쇄, 또는 반출을 강제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5항. 전시자는 모조 제품이나, 타인 또는 타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전시할 수 없으며, 국내 법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되거나 제한된 어떠한 제품(총칭, "위반물")을 전시할 수 없다. 전시자는 또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이나 국제보존협회(World Conservation Union(ICUN))에서 발행한 "비윤리적 제품"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포함한 윤리적 도축,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와 관련된 국제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을 전시할 수 없다. 주최자는 국내 법정에 의해 위반물로 여겨지는 제품을 소송과 별도로 물리적으로 반출할 수 있고, 해당 전시자의 참가를 취소하고, 부스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최자를 상대로 어떠한 금액도 청구할 수 없다.
제6항. 전시자는 위반물, 금지품, 비윤리 제품 전시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지며, 소유권, 책임, 손실, 소송, 소송절차, 피해, 판결, 비용(법률 비용 포함)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배상하며, 주최자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종류의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
제7항. 전시자는 행사 폐막 이전에 주최자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으며, 폐막 후 주최자가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모든 전시품 및 관련 물품 일체를 전시면적에서 자체 경비로 철거해야 하며, 물품을 포함한 전시면적은 처음 배정 받을 당시의 깨끗한 상태로 반납되어야 한다. 지정된 일정 내에 철거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해당 물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전시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6조】 참가비 및 광고비의 결제

제1항. 전시자는 참가비를 주최자가 정한 일정 및 해당 기한에 따라 납입해야 한다.
제2항. 주최자는 전시자가 참가 신청 시 작성한 참가신청서 또는 주최자가 발행한 청구서 상에 명시된 참가비 및 광고비를 주최자가 정한 지급 일정과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당 부스에 대한 전시자의 권리 또는 광고주의 권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전시자가 부스 설치 및 전시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참가비 납입과 관련된 모든 은행요금 및 기타수수료는 전시자가 부담한다.

【제 7조】 전시장 운영

제1항. 전시자는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장의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전시자는 전시회 개장 시간 중 자사 직원 또는 대리인을 상주시켜 자사 전시면적의 관리, 안전 및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자사 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동참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책임져야 한다. 또한 전시자는 자사 전시품 설치, 운영, 철거를 위해 선임된 담당자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며, 동 담당자는 전시회 개장 기간 내내 연락 가능하여야 한다.
제2항. 전시자는 전시장의 인적, 물적 요소에 대한 방해, 불편, 손상, 피해, 상해, 위험, 소란 및 참가 규정에 어긋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항. 전시자는 전시 기간 중 음향과 음악을 사용함에 있어 주최자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전시자는 확성기나 벨 등 소음을 유발하는 장치 및 설비의 사용으로 다른 전시자 및 방문객에게 피해를 줄 경우 주최자의 조치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제4항. 전시자는 전시장의 모든 소방, 전기 및 시설의 안전 등에 관한 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 및 설치물, 장치물 등은 국내법이 정한 소방 법규와 안전법에 따라 적합하게 방염 및 불연 처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화재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 전시자는(대리인 포함) 주최자의 전시장 운영 허가권과 관련하여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6항. 전시자는 주최자로부터 서면 상의 사전 허가 없이 타사의 전시품 및 부스 장치, 기타 사항에 대한 스케치나, 사진촬영, 비디오 촬영 등 타사의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복사, 촬영 및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전시자는 조건 없이 해당 결과물을 주최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7항. 전시자는 전시장 내에서 주최자가 제공한 출입증을 항상 착용해야 한다.
제8항. 전시자는 주최자와 대리인, 공식장치사가 전시회 기간 중에 전시자와 대리인, 전시품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주최자는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이에 상응하는 보상 없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시자는 주최자가 위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제9항. 전시회 기간(설치 및 철거 기간을 포함) 동안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전시장 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전시자의 전시 운영 요원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제10항. 전시자는 전시장의 시설이나 구조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전시자는 전시장 또는 소유권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1항. 주최자는 전시자가 동 참가 규정과 전시장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전시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항. 전시자는 합법적인 협력 관계 혹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불법적인 제품이나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제품도 전시할 수 없다.
제13항. 전시자가 주최자가 정한 설치 기간 내에 장치 설치에 실패할 경우 또는 전시회가 종료되기 전 주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장치나 전시품을 철거할 경우 주최자는 해당 전시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전시자는 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항. 주최자는 사전 공지 없이 전시 개장 전, 중, 후에 항시 전시자 부스를 방문할 수 있다.

【제 8조】 의무

제1항.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와 전시자 매뉴얼 상의 규정과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주최자에게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항. 전시자는 전시회와 관련해 문서 또는 기타의 형태로 취득한 주최자 및 전시회에 관한 정보, 예컨대 주최자가 공표하는 일반적 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3항. 전시자가 전시회 참가를 위해 제공한 개별 정보는 전시회 공식 디렉토리에 게재하거나, 주최자나 주최자의 대리인이 주최자와 의사 소통을 하는데 이용하거나 주최자에 의해 법률적 권한이 이양됐거나 이양될 자에 의해 홍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시자는 전시회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방법으로 주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주최자는 제공된 정보에 따라 인쇄물, 홍보 매체 및 전시회 공식 디렉토리 상에 게재한다. 주최자는 제공된 정보에 대한 편집권을 가지며 이에 관한 누락이나 오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4항.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시자는 전시 참가 또는 전시회 참가 제안과 관련하여 그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주최자가 제14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한다. 제공한 정보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214 우도빌딩 8층, 유비엠코퍼레이션한국 ㈜로 연락한다. 전시자가 기제공한 정보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경우 전시자는 수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브랜드의 사용
- 동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브랜드 관련 사용 지침을 전시자 매뉴얼 혹은 서면으로 제공한다.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비독점적이며, 양도가 불가하고, 로열티가 없고, 철회가 가능하며, 전 세계에서 사용이 가능한 브랜드 사용권을 계약일로부터 전시회 종료 시까지 제공한다. 전시자는 주최자가 제공한 브랜드 사용권을 홍보, 마케팅, 광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동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비독점적이며, 양도가 불가하고, 로열티가 없고, 철회가 가능하며, 전 세계에서 사용이 가능한 브랜드 사용권을 제공한다. 주최자는 전시회 참가와 관련해 전시자가 제공한 브랜드 사용권을 홍보, 마케팅, 광고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 전시자의 신원
- 전시자는 그와 그의 대표자(대리인) (확실히 하기 위하여, UBM이 서면으로 승인한 전시대 공유자들과 그들의 대표자(대리인)도 포함)는 (i) 다음과 같은 금지 지역들(쿠바, 이란, 북한, 수단 및 시리아)에서 설립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들에 설립된 당사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되지도 아니하며, 당사자 또는 그 밖에 그 지역들의 통상적인 거주자도 아니고, 그리고 (ii) 미국, 유럽연합, 영국 및/또는 UN이 관리하는 제재 당사자 리스트에 지정되거나, 지정된 당사자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지 아니함을 보장한다.

【제 9조】 보험

제1항. 전시자는 보험과 관련된 전시자 매뉴얼의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2항. 전시자는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자 및 대리인의 전시회 참가, 전시면적, 전시장 내 전시품목에 대한 위험에 대비하여 전시자 매뉴얼에 기재되어있는 최소 가입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3항. 전시자는 전시회 설치 및 철거 기간을 포함한 전시 기간 중 전시장 내, 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난이나 화재, 재산손실, 상해, 제삼자 손실, 사고, 자연재해, 재난, 재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전시회 연기, 조기 폐막 및 취소 등에 대비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로 인한 결과에 대해 주최자에게 어떠한 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제4항. 주최자는 언제라도 보험증서 및 영수증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전시자는 전시회 설치 및 철거 기간을 포함한 전시 기간 중 전시장에 발생한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전시자는 제10조에 따라 전시회에 대한 연기나, 취소 혹은 어떠한 변화에 따른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제 10조】 연기, 변경, 취소 및 환불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전시회를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전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주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재난, 홍수, 지진, 전쟁, 화재, 시민 폭동, 파업, 테러, 혁명, 특정 지역 봉쇄 또는 폐쇄, 연좌 농성, 입출항 금지 상태, 산업 또는 무역 분쟁, 이상 기후, 질병, 공중보건 상의 위협, 물자, 인력, 전기 혹은 기타 자원의 부족, 조정자의 중재, 전시장 파손 또는 붕괴, 정부의 긴급 정책이나 법률 가동, 국제 분쟁, 여행, 전시회 또는 집회 등에 관한 정부 혹은 국제 기구의 권고 등으로 인해 전시자 또는 방문객의 참가가 불가능하거나 전시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2항. 주최자가 판단하기에 기존 계획대로 전시회를 주최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알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타 모든 경우

【제 11조】 계약의 해지

주최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항. 제10조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 전시회가 취소될 경우.
제2항. 주최자가 전시자의 전시품 또는 전시회 참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3항. 전시회 참가비가 동 규정 제6조 및 관련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납입되지 않았을 경우.
제4항. 전시자가 제9조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 적절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5항. 전시자가 자체 사유로 인해 배정된 전시면적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전시회 참가 규정

제6항. 전시자의 파산, 채권단에 의한 회사 청산 또는 관리, 재산 관리, 해산, 부도, 채무정리계약 등의 상황에 처해 재산
권 행사가 제한 당할 예정이거나 이미 제한 당한 경우.
제7항. 전시자가 전시회나 주최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형사범으로 수배 중이거나 유죄 선고를 받은 경우.
제8항. 전시자가 동 참가 규정이나 전시자 매뉴얼 상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제9항. 전시자가 국내 법률을 위반하거나 전시자 또는 대표자(대리인) (확실히 하기 위하여, UBM이 서면으로 승인한 전시대 공유자들과 그들의 대표자(대리인)도 포함)에게 영향을 미치는 해당 법령, 규칙 또는 규정에 따른 수출 및/또는 재정 규제 및/또는 제재를 위반한 경우.

동 계약이 어떠한 사유로든지 해지될 경우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면적 또는 전시 자가 기 납입한 참가비에 대한 권리는 주최자에게 귀속되며 주최자는 전시자가 미결제한 금액이나 계약 해지로 발생한 비용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치 및 철거 기간을 포함한 전시 기간 중 상기와 동일한 사유로 계약이 해 지될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전시자의 소유물을 철거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전시장 내 전시자의 모든 소유물은 계약 해지 즉시 전시장으로부터 철수돼야 하고 해당 비용은 전시자가 부담해야 한다. 주최자는 전시회와 관련해 전시자가 주최자에 끼친 손해에 대해 보상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전시자의 책임은 계약 해지 후에도 이행해야 한다.

【제 12조】 책임, 보상 및 환불

(제12조를 주의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참가에 대한 모든 위험 부담은 전시자에게 있다. 전시자는 계약 또는 전시자 매뉴얼 위반, 전시자 또는 대리인의 채무 불이행, 과실, 손해 등에 대한 모든 소유권, 책임, 손실, 소송, 소송절차, 피해, 판결, 비용(법률 비용 포함)에 반하여 주최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전시자는 모든 전시품 및 관련 물품의 전시장 반입 및 반출의 책임을 진다.
제1항. 전시자는 전시회와 관련해 전시자나 전시자 대리인의 부주의나 태만 또는 동 계약이나 전시자 매뉴얼 상의 내용을 불이행함으로 초래된 모든 책임, 손실, 법적 절차, 손해 배상, 경비 및 수반되는 비용(법률 비용 포함)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2항. 전시품의 전시장 반입, 전시 및 반출은 전시자의 책임 하에 위험 및 손실에 대한 보호 수단을 강구한 후 이뤄져야 한다.
제3항. 주최자는 전시회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전시자 및 제삼자가 도난, 화재, 안전보안실 사용, 전시장 시설의 문제, 주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행사 취소/이른 개막/개막지연, 동 규정의 제3조와 제4조와 관련하여 파생된 문제, 정부(정부기관 및 부서 포함)가 부과하는 세금,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여하 한 유형의 직접 및 간접적인 분실, 손상, 요구, 비용, 청구, 손실 또는 채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전시자는 전시자의 부스 내에서 발생한 제삼자의 모든 소송, 상해 및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4항. 주최자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전시자 또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도 어떤 의무나 법률적 책임이 없다.
(가) 전시자가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제공한 홍보 자료 또는 물건 상의 정보나 장비, 제품,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오류나 누락 또는 하자.
(나) 주최자 또는 전시자가 제작 또는 대리하도록 하는 전시회 공식 디렉토리, 홍보 자료, 정보 또는 물건 상의 전시자와 관련된 정보, 장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오류나 누락.
(다) 전시자에 의해 전시되거나 판매되는 전시품의 하자나 정보 오류.
(라) 주최자가 동 계약과 관련하거나 전시자 매뉴얼과 관련해 수행하는 모든 의무.
(마) 전시장이나 전시장에 의해 지정된 운영자나 또는 주최자나 주최자에 의해 지정된 운영자의 장비나 컴퓨터의 고장, 오류로 인한 여하한 직, 간접적 손실이나 손해.
(바)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적 책임.
전시자는 상기 조항들이 주최자를 전시회 주최자로서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임을 인정한다.
제5항. 주최자 혹은 관련된 어떠한 대리인도 불법행위(과실 및 법규 위반 포함)에 따른 책임이 없으며, 동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발생 하는 수익손실(직간접적 손실을 포함)을 포함하여 매출, 물품, 사용권, 기대수익, 영업권, 평판, 사업 기회 에 대한 손실 및 간접적, 부수적, 특별손실 혹은 간접손해에 대해 예측되거나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에 대해 지문을 받았다 할지라도 책임이 없다.
제6항. 참가신청서 상 혹은 참가신청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과실 및 법규 위반)에 따른 주최자의 총 책임은 참가자가 해당하는 전시회를 위해 납부한 총 참가비에 한정된다.
제7항. 법령 상 함축된 모든 보증과 조건 그리고 기타 용어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동 참가신청서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동 참가신청서의 어떠한 내용도 주최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시키지 않으며, 주최자에 의한 사기나 악의 부실표시, 혹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책임도 법에 의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없다.

【제 13조】 법령의 준수

전시자는 전시가 열리는 국가 또는 지역의 모든 관련 법령, 규정 및 규칙을준수하여야 하고, 그러한 법률 등을 지키고 준수하며, 전시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바에 따라 모든 동의, 승인, 권한, 라이선스 등을 확보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시자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 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CITES)) 및 윤리적 도축과 멸종위기 종의 보존에 관한 그 밖의 국제 기준, 규정 및 법령도 지키고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국제보존협회(World Conservation Union(ICUN))가 발표하는 기준 등이 포함된다.

【제 14조】 주최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역

주최자는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한다. 이 내역은 주최자의 방침과 실무를 설명한다.
주최자는 전시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전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해 노력한다:
(가) 주최자가 수집한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안을 위한 온라인상, 물리적, 절차적 보호.
(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수집의 최소화.
(다) 교육을 받고 권한을 위임 받은 직원에게만 제한적으로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부여.
(라) 전시자가 동의하거나, 주최자가 법이나 법 집행기관으로부터 요구 받거나, 주최자가 전시자에게 미리 동의를 구한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마) 주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수집한 개인 정보는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관.
제1항. 개인정보 수집
전시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래 단락에 기재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최자는 전시자와 사전 연락을 취한 후 특정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주최자는 전시자의 특정 연락 담당자의 개인 혹은 직원의 정보(즉,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직위)를 수집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필수 정보를 비롯한 일부 사항은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전시자가 요청된 필수 정보 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다. 주최자가 오랜기간 개인정보를 보유할 시에는 제3항에 기재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제2항. 정보의 이용
주최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전시회에 전시하거나 참여하기 위한 등록 절차를 진행할 경우.
(나) 수집된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분석, 연구 및 회계를 통해 전시회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우.
(다) 주최사의 협력사 혹은 제휴사의 행사나 전시회가 한국이나 해외에서 개최될 시 이를 전시자에게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경우.
(라) 전시자의 홍보자료나 연구 자료를 배포할 경우.
(마) 전시자의 서비스나 상품을 홍보할 경우.
(바) 필요시 연체비용 수집 등 법적 소송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경우.
직접 마케팅
주최자는 전시자의 이름, 이메일 주소, 우편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를 직접 마케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및 해외 전시회 홍보 및 초청장 발송, 제휴사 및 협력사가 주최하는 행사 및 전시회, 그리고 전시회 서비스 홍보를 팩스, 이메일, 우편, 전화, 이뉴스레터 발송 등 여러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해 사용할 수 있다. 주최자는 이와 같은 사 용을 위해 전시자의 동의를 얻은 후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연락하여 홍보물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주최자는 별도의 비용 없이 이를 수용한다.
제3항. 공개 / 정보의 이전
주최자는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나 다음과 같은 기관 및 업체, 또는 개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가) 현장 운영, 분석 및 연구, 회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 한 에이전트, 고문, 회계, 장치업체, 서비스 제공업체.
(나) 한국 및 해외 전시회 에서의 홍보, 초청과 관계된 직접 마케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최자의 해외 오피스, 전시회 협력사, 제휴사.
(다) 국내 및 해외에서 적법절차에 의거 정보 공 개를 요구하는 관계자.
주최자는 이름, 이메일주소, 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시자의 개인정보를 전시회, 행사의 홍보 및 초청과 관련된 직접 마케팅을 위해 해외 오피스, 전시 관련 협력사, 제휴사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만약 전시자가 개인정보를 위의 용도로 사용하는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최자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주최자는 이를 수용한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시회 공식 웹사이트(http://www.cphikorea.co.kr/page/bbs/data/2017/CPhIK17_PrivacyPolicy.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최자는 수시로 그러한 세부사항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므로, 전시자는 정기적 으로 세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항. 쿠키 [온라인 이용자에게 해당]
전시자가 주최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할 시 전시자의 컴퓨터에 쿠키가 저장된다. 주최자는 홈페이지 맞춤화와 서비 스 운영을 위해 쿠키를 사용할 수 있다. 전시자는 쿠키를 수락하지 않을 수 있으나, 수락하지 않을 경우, 웹사이트상의 특정 기능 사용이 불가할 수 있다.
제5항. 보안
일반적으로 전시자의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며 권한을 위임 받은 직원에 한해 접근이 가능하다. 컴퓨터에 저 장된 개인정보는 패스워드로 보호되며 주최자 웹 보안으로 암호화 기술이 사용된다.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주최자의 직원들은 자의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전시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묻지 않는다. 전시자는 웹 작업을 마친 뒤 로그아웃 후 인터넷 창을 닫아야 한다. 전시자는 전시자의 아이디 와 비밀번호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6항. 하이퍼링크 [온라인 이용자에게 해당]
주최자의 웹사이트는 회원, 제 3자, 협력사의 웹사이트 등과 같이 외부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할 수 있다. 외부로 연결되는 링크가 주최자의 해당 회사의 제품, 서비스, 웹사이트 등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주최자는 해당사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 주최자는 외부 사이트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개인정보 규정 은 링크된 외부 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항. 규정변경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관련된 변경은 웹사이트(www.cphikorea.co.kr)에 게재되며 게재된 즉시 시행된다.
제8항. 정보의 해외 이전
해외로의 정보 전송 일반적으로 주최자는 전시자의 개인정보를 한국 서버에 보관하나, 해외 오피스나 위(3)에 명시된 기관에 전달할 수 있다.
제9항. 동의 및 전시자의 권리
전시자의 동의 및 권리 전시자는 참가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개인정보 사용과 수집에 동의하고 마케팅 자료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하에 각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주최자에게 전시자의 개인정보 보유 여부 확인 및 열람을 요청할 권리
-부정확한 개인정보 수정을 요청할 권리
-주최자가 보유한 개인정보의 운용 방식 및 정책을 확인할 권리
개인정보 열람 및 수정, 문의, 불만 접수는 아래의 주최자에게 문의한다 :

유비엠코퍼레이션한국 (주)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214 우도빌딩 8층 우. 02121
전화: 02-6715-5400 팩스: 02-432-5885 이메일: Hemy.Lee@ubm.com

주최자는 정보 열람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절한 비용에 대하여 전시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내역의 국문 버전과 영문 버전 간 상충되는 점이 있을 경우 영문 버전이 우선한다.

【제 15조】 일반조항

제1항. 전시자는 동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삼자에게 위임, 양도, 부과할 수 없다. 단, 전시자 매뉴얼 상에 명시된 공식장치사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해서만 일부 제외된다. 주최자는 전시자의 동의 또는 사전 고지 없이도 동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동 계약에 따라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모두 서면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등록된 주소지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전달받은 주소로 발송한다. 우편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통지서는 발송일 후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 통지서가 올바른 주소로 발송되었으며 배송비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직접 전달하거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메일 실패 메시지를 수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즉시 수신한 것으로 간주 한다.
제3항. 주최자는 전시자의 주최자에 대한 채무나 주최자의 전시자에 대한 채무 등에 대해 각각 상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4항. 동 규정의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도 주최자 임원의 서명 날인된 문서 상의 확인 없이는 어떠한 주최자의 권리 포기의사도 유효하지 않다.
제5항. 주최자의 권리는 전시자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양여나 지불 유예, 권리 주장에 대한 보류 의사에 의해 한정되거나 침해 당하지 않는다.
제6항. 주최자 또는 주최자를 대리해 허용된 위약 사항에 대한 권리 포기 의사는 해당 1회에 한하며 동일한 건 또는 이후에 일어나는 건에 대한 권리 포기가 아니다.
제7항. 전시자 매뉴얼 및 참가신청서 상의 참가 규정은 양자 간의 사전 동의, 절충 및 협의보다 효력을 지닌다.
제8항. 전시자는 참가 규정이나 전시자 매뉴얼에 명기된 사항을 제외하고, 전시회 참가 이전에 주최자나 주최자의 대리인에 의해 진술되거나 보증 또는 계약에 부연된 내용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제9항. 동 규정의 각 조항 제목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각 항목이 말하는 내용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제10항. 동 계약의 어떠한 부분도 주최자와 전시자의 관계를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해석하지 않으며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전시면적에 대하여 독점적이지 않은 이용 권한을 부여할 뿐 소유권이나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제11항. 동 규정의 각 조항, 항목 및 세부 문장은 각각 독립적으로 해석되며 그 유효성은 그 중 일부가 유효성이 없다고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어느 일부라도 법률적 효력이 없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법률적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항목을 삭제할 수 있다.
제12항.주최자가 제공하는 전시회 규정 중 상충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 동 참가 규정이 전시회의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 1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동 규정과 규칙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해 해석, 적용되며, 이 계약 또는 전시회와 관련된 모든 목적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을 비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 17조】 보충조항

제1항. 전시회와 관련된 문제 중 동 규정과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자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제2항. 주최자는 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 참가 규정이나 전시자 매뉴얼에 명시하지 않은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주최자가 정한 보충 규정은 참가 규정의 일부로 간주되며 전시자에게 효력을 미친다.

본인은 이 서면에 의하여 위에 규정된 표준 참가 규정을 준수하는데 동의하고, 본인이 위 제14조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며, 본인이 본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나아가, 본인은 동의를 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개인정보의 제공하지 아니하게 되면, 주최자가 본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 ] 본인은 위 내역에 기재된 바에 따른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본인은 위 내역에 기재된 바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국외 이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본인은 위 내역에 기재된 바에 따른 개인정보의 마케팅을 위한 이용 및 제공을 포함하여,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한 마케팅 메시지의 수신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회사명: _____

■ 담당자명: _____

■ 직함: _____

■ 날짜: _____

■ 회사 명판 및 서명: _____